
2022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주요 지적 사례



2023. 8.

서 울 대 학 교
[감 사 팀]

□ 수의계약 부적정

-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담당 직원은 물품의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추정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같은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연간 3,100~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단가계약을 통해 구입하면서 추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매년 초에 특정 업체 2곳 정도의 견적서만을 참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후 물품 단가 금액만을 기재하여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찰 공고기간 미준수

- 「서울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무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¹⁾에 입찰 공고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다만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²⁾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일로, 긴급한 사유³⁾· 고시금액 미만·재공고 입찰인 경우에 한해서는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관련 지침에 명시된 기준보다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11일 미달하여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 입찰공고일 및 입찰마감일은 각각 공고기간에서 제외

2)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

- 위 지침에 따른 긴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 건에 대해 긴급 사유를 적용하여 임의로 입찰 공고기간을 단축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정보화 사업 기술 검토 미실시

-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총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 관련 예산을 기관 자체적으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본부의 사전 기술 검토를 거친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3천만 원 이상 정보화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화본부의 사전 기술 검토를 거치지 않았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수 공사에 대한 공사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방수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이 아닌 1년으로 과소 설정하였음.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법인회계 교내연구과제비 지출 부적정

-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인회계 예산 집행 시에는 위 지침 및 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예산과목(세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산학협력단장과 연구 과제 협약을 체결하는 교내연구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 개발비 세목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예산과에서 매년 안내하는 「법인회계 예산편성 계획」의 ‘세출예산

작성지침 총괄 유의사항'에 따르면 연구처, 기획처, 국고출연금 연구사업(기존 출연금 사업 포함)과 입학사정관제 운영 사업 외에는 연구개발비와 연구지원비 편성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교내연구과제비 집행 예산으로 편성 되지 않은 법인회계 재원(교육지원비, 기타운영비)으로 교내연구과제비를 지출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법인회계 예산편성 계획(예산과)]

□ 외국어 강의지원수당 지급 부적정

- 교무처(학사과)는 「외국어 진행 강의에 대한 강의지원수당 및 강의개발비 지급계획」(총장 결재)에 따라 외국어로 강의한 내국인 전임교원 등에게 외국어 강의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영어강의 교과목에서 담당교원이 실제로 강의하지 않았는데도 외국어 강의지원수당을 신청하여 위 과목 담당교원에게 외국어 강의지원수당이 지급 되도록 하였음.

[관련 규정: 외국어 진행 강의에 대한 강의지원수당 및 강의개발비 지급계획(학사과),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 논문지도비 지급 부적정

-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원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은 반드시 규정에 근거를 두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교육부의 감사지적 사례에 따르면 교원 본연의 업무인 논문지도 및 논문대체

보고서 지도를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학위과정생의 논문을 지도하는 교원에게 학년도별 논문지도비를 법인회계 재원으로 지급하였음.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17년 국립대 감사 관련 주요 지적사례(교육부)]

□ 겸직 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36조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 정관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위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직원이 겸직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의 직원 A 등은 근무상황을 신청하지 않고 타 기관에 출강하거나, 경기도 부천시 소재 ■■■■대학교에서 16시부터 시작하는 강의를 위한 조퇴를 16시부터 신청하는 등 목적지로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할 때 과소한 시간을 근무상황으로 신청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